

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 하기 위한 평창군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설립 및 운영(안 제2조)

-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
-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함

나. 재원조성(안 제3조)

- 회원(특별, 단체, 개인)의 회비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
- 출연을 원하는 기관, 단체의 출연금품
-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
- 그 밖의 수익금 등
- 평창군수는 회의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

다. 회의소의 수행사업(안 제4조)

- 농어업 관련 정책(예산사업 포함)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·건의
-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-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- 농어업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참여
-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·알선
-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-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
-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
-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
- 관내·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
- 그 밖의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라. 수익사업(안 제5조)

- 회의소는 안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

마.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(안 제6조)

- 군수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의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
-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2. 4. 5 ~ 4. 25(21일간, 제출의견 없음)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,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 평창군 농어업회의소(이하 "회의소"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.

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조(재원조성)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회원(특별, 단체, 개인)의 회비
2.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
3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의 출연금품
4.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
5. 그 밖의 수익금 등

②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회의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어업 관련 정책(예산 사업 포함)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
2.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5. 농어업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참여
6.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·알선
7.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8.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
9.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
10.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1. 관내·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
12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13.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위탁 및 운영지원) ① 군수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규정)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사무국 근무요원(회장, 사무국장, 간사) 인건비, 사무국 공공요금, 수용비 차량비, 출장여비, 회원 교육비, 회의소 소식지 발간비용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축산과장 이상필
연락처	(033) 330 -1305

조례 제정 관계 법령(근거)

[지방자치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

제4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[산림기본법]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,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]

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[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]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

등의 삶의 질 향상,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